

Korean Tax Update

March 2017, Issue 33

[조세뉴스]

기획재정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 제정 [\[전문보기\]](#)

기획재정부는 '16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BEPS) 방지 프로젝트 과제(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인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자 및 작성 범위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담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여 고시함.

가.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

- ①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 · 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
- ②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 · 비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ㄱ)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거나,
 - (ㄴ)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우리나라간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나. (제출의무 면제) 다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아래의 자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 동일한 다국적기업 그룹의 다른 국내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 제출하는 경우
- 최종 모회사가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하여금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소재지국과 우리나라간 국가별보고서가 정상적으로 교환되는 경우

다. 국가별보고서 작성 범위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소속된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회사들에 대하여 국가별보고서를 작성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전문보기]

'17.3.28.(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고용 및 저소득층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최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고용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저소득 가구의 소득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대상을 확대하였음.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었던 혼인세액공제 신설은 저출산 대책 전반과 연계하여 정기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금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임.

가. '17년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인상

(*) 고용 비례 추가공제: 투자금액에 추가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하되, 기업의 고용증가인원 1인당 1,500~2,500 만원(대·중견기업은 1,000~2,000 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 중소기업은 2%p(4~6%→6~8%), 중견기업은 1%p(4~6%→5~7%) 인상
- 대기업의 경우에는 3~5%로 현행 유지

나.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액 확대

(*) 직전 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1인당 공제액을 중소기업은 500 만원→1,000 만원, 중견기업은 500 만원→700 만원, 대기업은 200 만원→300 만원으로 확대

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확대

(*) '16.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17.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중소기업 1인당 공제액을 200 만원→700 만원으로 확대
- 적용대상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1인당 500 만원 공제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보기]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가. 잠정가격 신고 요건 및 신청서 서식 규정(안 제3조 및 별지 제1호의 5 서식 신설)

-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세의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요건과 신청서 서식을 정함.

- 나. 관세환급 가산금 등의 이율 인하(안 제 9 조의 3)
- 관세환급 가산금 등의 이율을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연 1.8%에서 연 1.6%로 인하함.
- 다.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국제경기대회에 2017 피파 20 세 월드컵을 추가(안 제 43 조)
- 2017 피파 20 세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대회 관련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함.
- 라. 과세자료 제출서식 규정(안 제 79 조의 4 및 별지 제 36 호.제 37 호.제 51 호부터 제 55 호까지)
- 과세자료 제출대상의 확대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기관이 제출하는 서식을 개정.신설함.
- 마.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설비 기준 완화(안 제 85 조)
-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설비 기준을 완화

[예규·판례]

[판례 1]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와 관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0 조 제 3 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48 조에서의 공동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에 한정됨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 두 57175 판결

- 법인세는 해당 법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인 것이라면 인건비 등 내부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손비로 산정하게 되나,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매출세액의 형태로 매입세액을 전가시키는 경우에만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점, 부가가치세에서는 사업관련성이 있는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애초부터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공제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는 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0 조 제 3 항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48 조 제 1 항을 준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중 매입세액의 공제가 허용되는 지출의 범위와 관련한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금액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공동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원고의 주장처럼 인건비 등 내부비용을 포함한 전체 공동경비 또는 면세대상 지출까지 포함한 이 사건 연구비를 기준으로 분담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연구비에 관한 매입세액 전부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 내부비용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출까지도 공제대상에 포함되게 되므로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와 관련하여 구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0 조 제 3 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48 조에서의 공동경비는 이 사건 연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례 2]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지확인 등 그 명칭 여부에 불구하고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함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 두 8360 판결

-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임.

[판례 3]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계산 시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 두 55295 판결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원칙적으로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고,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 한하여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음. 이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을 짐.

[판례 4]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이를 번복하고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 두 56790 판결

-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함.

[심판례 1]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금액에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도 포함됨

조심 2016 서 4277, 2017. 3. 9.

- 상증법 제 48 조 제 2 항 제 2 호 적용시 증여세 과세대상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의 취득재원 중 출연재산을 초과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증여세과세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점, 상증법 제 48 조 제 2 항 제 2 호 본문 괄호에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는 “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의 취득재원에 포함된 운용소득도 증여세과세대상에 포함됨.

[심판례 2] 외국법인에 대한 탄소배출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의 수출에 해당함

조심 2015 서 1946, 2017. 3. 2.

- 부가가치세법 제 11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을 수출하는 재화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 조 제 2 항에서 재화의 범위에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을 포함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령상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는 탄소배출권과 같은 무체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심판례 3] 합병 시 익금산입대상인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을 초과할 수 없음

조심 2014 구 3257, 2017. 3. 2.

- 합병 시 익금산입대상인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을 초과할 수 없고, 포함주식 취득 가액을 그 취득시기에 관계 없이 합병교부금으로 하여 합병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동 합병차익을 초과한 쟁점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임.

[심판례 4] 규모기준 초과로 인한 유예기간을 최초 적용받는 경우로서 이와 함께 관계기업 유예 배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심 2016 중 3157, 2017. 2. 22.

- 중소기업 유예기간 및 관계기업 제도의 도입 취지, 법령개정 연혁 등을 감안할 때,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에는 이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규모기준 초과로 인한 유예기간을 2012 사업연도에 최초로 적용받는 경우로서 이와 함께 동 사업연도에 관계기업 유예 배제와 동시에 적용되므로, 관계기업 유예 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규모초과로 인한 유예기간만을 적용하여 위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015. 2. 3.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2015. 1. 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2012, 2013 사업연도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2 사업연도부터 관계기업으로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2, 2013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시 일반법인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례 5] 통화파생상품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여신성가지급금은 금융감독원의 대손상각 승인대상 금융채권에 해당함

조심 2013 서 4034, 2017. 2. 22.

- 기획재정부 예규에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별도 판단에 불구하고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상각 승인받은 쟁점채권의 대손상각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심판례 6]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의 경우 우선주주 등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없음

조심 2016 전 3624, 2017. 2. 21.

-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과세요건은 과세장소이므로 어떤 골프장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고 대중골프장은 과세장소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장소는 골프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요건과 무관하게 누가 회원으로 이용하는지를 과세요건으로 하여 일부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기획재정부 등에서도 체육시설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아 등록한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의 경우 우선주주 등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한다는 것만으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는 점, 이 건 부가가치세는 개별소비세가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근거이며 과세요건인 개별소비세가 부존재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이용권리자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판례 7]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로써 주식의 가치가 증가되지 않더라도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조심 2016 서 4288, 2017. 2. 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 두 19693 판결)에 따라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 이의 및 그 계산방식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 판결에서 지적한 위법성을 제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과세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관장하는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위 법령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에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주의 실질이익을 고려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례 8]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조심 2016 서 3808, 2017. 2. 14.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의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예규 1]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재법인-320, 2017. 3. 6.

-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세법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차차량은 법인세법 제27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차량운행과 관련한 위탁용역을 체결한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차량운행 업무위탁 대가는 법인세법 제27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차량리스료, 유류대, 통행료 등)은 법인세법 제27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 중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이면서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일정기간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 임차한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사업연도 중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의 차량임차료 중 운행기록 등 증명서류에 의해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시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동 기간의 사적사용비율(해당 퇴직자의 사적사용거리÷총주행거리)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예규 2] 분할하는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창고를 관련 법률 규정상 분할신설 법인으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 적격분할조건 중 예외사항인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재법인-84, 2017. 2. 2.

- 분할하는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창고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른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예규 3]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이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재조특-97, 2017. 1. 1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 23590 호로 개정되어 2015. 2. 3. 제 2607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 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이 유예기간 중 같은 영 제 2 조 제 2 항 제 3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예규 4]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된 합병대가를 지급하고 이월결손금이 없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 80 조의 3 제 3 항에 따른 합병매수차손은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함

재법인-36, 2017. 1. 8.

- 법인세법 제 44 조의 2 제 3 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 조의 5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합병대가를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하고, 이월결손금이 없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 80 조의 3 제 3 항에 따른 합병매수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80 조의 3 제 2 항의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coe@kr.kpmg.com